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2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268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38,106,6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2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 B은 2018. 12. 21. 당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으로 줄여 쓴다)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시 ◯◯구 C 일원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수분양자 F으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제1 주택의 공급계약서 명의를 원고 B으로 변경하고, 2020. 8. 6. 위 공급계약서 명의를 다시 원고들로 변경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21. 2. 23. 그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제1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들은 2020. 12. 24. 매도인 G과 사이에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의왕시 H 주택의 제지하층 I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제2 주택',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1. 1. 6. 그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마쳤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세대/ 연립/ 빌라 매매계약서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시 H건물 제지하층 I호					
토지	지목	대	대지권	319.5분의 35.87	면적	391.5㎡
건물	구조	연와조	용도	다세대주택	면적	33.03㎡

2. 계약내용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 및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27

매매대금	일금 사억오천삼백육십오만 원정 (₩ 453,650,000)		
계약금	일금 오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중도금	일금 오천만 원정은 2020년 12월 25일에 지불하며,		
	일금 이어오천만 원정은 2021년 2월 19일에 지불한다.		
잔금	일금 일억삼백육십오만 원정은 2021년 3월 22일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1. 상기 소재지는 J구역 주택재개발지역으로 현재 이주 중이며, 본 예약 대상 물건은 59형(24평형) 신청 확정되었고, 조합원의 지위에 이상 없음을 조합사무실(전화번호 1 생략)에서 확인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 금 96,228,000원(주택도시보증공사)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의 계약이며, 이주비대출 원금은 80,190,000원이고, 잔금때 이주비 40% 승계조건, 나머지 금액은 상환조건임(상환금액 20%에 관한 이자는 매수인 부담조건, 혹 매수인이 이주비대출 안될 경우 상환이자 비용은 매수인 부담).
3. 종전자산 평가금액 금 133,650,000원이며(관리처분인가통지서 첨부), 계약체결일 이후 매매대상 부동산의 행정적 사항 및 권리가액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매도인, 매수인은 조건없이 이에 따르기로 한다.
4. 기타 사항은 부동산 매매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21. 3. 22.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마쳤다. 이후 2021. 5. 14. 이 사건 제2 주택에 관하여 건축물 멸실을 이유로 건축물 대장이 말소되었다.

마. 원고들은 2021. 3. 22.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2 주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등기 원인을 유상취득, 등기 물건을 이 사건 제2 주택 매매, 과세표준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27

매매대금인 453,65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6,292,000원, 지방교육세 1,814,600원 합계 38,106,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이후 원고들은 2021.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종전 주택(이 사건 제1 주택, 이하 같다)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지구 내 신규 주택(이 사건 제2 주택, 멸실예정주택, 이하 같다)을 취득한 경우로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 취득일(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므로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세액을 일반세율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2. 3.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일시적 2주택 기간)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 신규 주택에 한하여 중과세가 제외되는바, 원고들의 경우 재개발사업지구 내 신규주택 취득을 일시적 2주택 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나,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 취득일(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10.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27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주택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추가로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제2 주택이 아니라 이 사건 제2 주택의 멸실로 주어지는 아파트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취득세의 중과세가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이하 '이 사건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2 주택의 멸실 후에 새로 분양받게 되는 주택의 취득일(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은 그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인 이 사건 제1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이 사건 제2 주택 자체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라는 사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27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에 의하면,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5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27

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2)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지방세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사건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이 사건 제2 주택 자체를 취득한 2021. 3. 22.부터 1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거기에 위법 또는 부당한 점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2018. 12. 2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이 사건 제1 주택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2. 23.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1 주택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그리고 ㉮ 원고들이 2020. 12. 2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6. 그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며, 2021. 3. 22.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마친 사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의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제2 주택이 기재되어 있고, 위 부동산거래신고서에도 거래의 대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아니라 '토지 및 건축물인 이 사건 제2 주택'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이후 2021. 5. 14. 이 사건 제2 주택에 관하여 건축물 멸실을 이유로 건축물 대장이 말소된 사실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27

앞서 본 바와 같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합원입주권은 이 사건 제2 주택의 소유권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출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고, ㉳ 이 사건 제2 주택은 건축물로서 이를 표시하는 공부와 건물 자체가 멸실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의 대상이나 목적이 된다. ㉴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되는 경우 철거가 예정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주택의 취득으로 볼 것인지, 분양권의 취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이미 조세당국에서는 2018. 1. 1.부터 기존 유권해석으로 다양한 사례에 적용이 곤란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상이한 운영에 따른 과세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건물)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갑 제8호증), 이러한 기준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매수한 것(매매의 대상)은 이 사건 제2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이나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에 관한 국세청의 답변(갑 제13호증) 등과 같이 원고들이 드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③ 나아가 설령 이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것을 이 사건 제2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의2에서 정한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에 있어서는 그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의 수에 포함되는바(앞서 본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2호), 결국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것이 이 사건 제2 주택인지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는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 원고들에게 적용 또는 인정되는 이 사건 일시적 2주택의 기간이 언제부터 기산되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27

④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조합원입주권으로 얻게 되는 새 주택의 취득일(준공일)부터 일시적 2주택의 기간이 시작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2항). 그러나 원고들은 주택(건물) 자체인 이 사건 제1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과 같은 경우에 대한 일시적 2주택의 기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및 1세대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2020. 8. 12.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그 입법 취지나 제도의 목적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입법 취지나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경우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에 있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성을 찾아볼 수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27

㈐ 원고들은 행정안전부의 2020. 11. 주택 중과세 제도 도입 및 주요 쟁점해설 자료에서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에 관하여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3년 이내(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갑 제6호증 42쪽)'이라고 설명한 내용을 원고들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같은 쟁점해설 자료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과 관련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종전 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 예정인 주택(B)을 취득한 경우에는 B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A주택을 처분해야함[종전 주택 보유 상태에서 신규 주택의 처분(멸실)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설명하고 있는바(갑 제6호증 제56쪽), 원고들의 경우는 이에 더 부합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앞서 본 2018. 1. 1.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되는 경우 철거가 예정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과 기준과도 일관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인정해주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주택을 취득한 다음 불과 1개월 정도 후에 이 사건 제2 주택을 취득한 사유로 이 사건 제1 주택 주변의 소음·매연 문제, 자녀들의 학업과 건강 등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당장 들어가 살기 어려운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멸실 예정인 이 사건 제2 주택을 매수한 점, 이 사건 제1 주택 주변의 소음·매연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27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27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27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27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